

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경쟁과제(일반)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『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경쟁과제(일반)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3월 26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- “글로벌전략기술개발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(First mover)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

글로벌경쟁과제 :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

- '15년 지원규모 : 100억원 (신규 100억원)

2. 지원분야

- 수출유망 228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요청서(RFP : Request for proposal)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(붙임2)

☞ 기술제안요청서(RFP)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,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

3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

최근 3년('12년~'14년)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(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)

- 가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
- 나) 벤처기업,
- 다)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
- 라)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1% 이상인 기업

□ 신청자격의 검토□확인

중소기업 경영현황표(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온라인 입력)를 토대로 서면 검토(전문기관)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
* (관리기관)각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**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	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*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
수출실적	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(확인)서
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	기술개발(R&D)투자비는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원가명세서 등의 해당계정과목을 확인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** <붙임>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작성하여 현장조사서 제출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	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* 참여제한확인 :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 >> 온라인과제관리 >> 과제신청 >> 신청안내 >> 참여제한 확인 ** 제재조치여부 확인 :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 >> 온라인과제관리 >> 제재조치 >> 중소기업청 제재조치, NTIS제재조치

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- ※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- 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4. 지원내용 및 한도

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**60%이내**에서 최대 **2년, 10억원** (연간 5억원 이내)까지 지원

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**40%이상**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**20%이상**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)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2015년 4월 2일(목) ~ 4월 27일(월)

- ※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등에 대한 전화 응대는 **접수마감일 18:00까지**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**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신청완료 요망 (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)**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- ※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※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경쟁과제(일반) 시행계획 공고
- ※ 접수확인을 위한 **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**

온라인 신청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I	

〈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〉

- ① 1단계 : 회원가입
 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- 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 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-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 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□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 - [별지 제1-② ~ ⑧호]의 구비서류를 업로드
- 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 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**접수증 출력**(신청□접수 완료 확인)
 - ☞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완료” 확인 필요

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 명		제출방법	해당여부
①	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	Part I Part II	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	공 통
②	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			
③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	
④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	
⑤	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		* 인터넷 (www.smtech.go.kr)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	해당시
⑥	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			
⑦	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			
⑧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		

*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15. 8. 1로 기재
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
6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현장조사(5월)

신청기업(주관기관)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능력,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 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

□ 대면평가(6월)

분야별 산□학□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, 사업계획의 창의성□도전성, 기술성,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□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(7월)

대면평가결과,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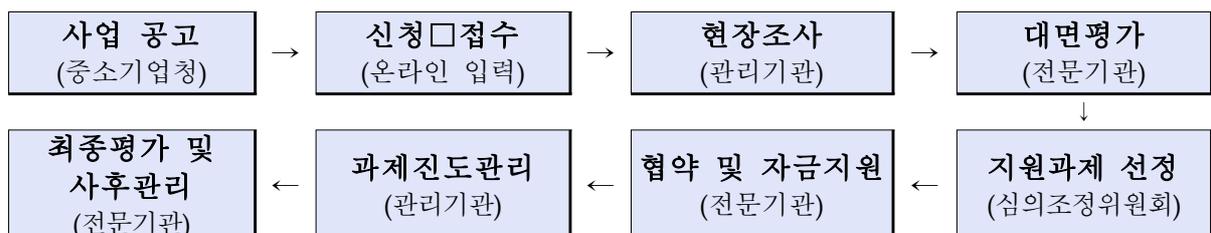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+ 우대배점 - 감점

□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8월)

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

< 글로벌경쟁과제 추진절차 >



* (관리기관) 각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7. 기술료 납부
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“성공” 으로 판정될 경우,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8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□발견되는 경우 평가□지원 제외 할 수 있음

※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
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
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
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
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□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④ 참여제한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- * 단 아래의 ㉠부터 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

㉠ 기업의 부도, 휴 폐업

㉡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- *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- **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㉢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
- * 단,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
㉣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⑥ 과제 참여율

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
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
- 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
9. 기타 공지사항

-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.
본 공고의 '글로벌경쟁과제(일반)'는 동일날짜에 공고될 『2015년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(해외마케팅□R&D지원) 사업공고(15.3.26)』의 '중국시장진출 R&D'와 동일한 세부과제이므로 2개 중 1개 과제(1회)만 신청가능

* 동 공고의 글로벌경쟁과제(일반)'를 신청할 경우 동일날짜로 공고될 2015년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(해외마케팅□R&D지원)' 중 중국 시장진출 R&D'에는 신청 불가

사업명	내역사업명	세부과제명
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	글로벌전략 기술개발	글로벌유망과제
		글로벌경쟁과제 (중국진출과제, 일반과제)

※ 예시

글로벌경쟁(일반)	글로벌경쟁(중국진출)	가능여부
신청	미신청	가능
미신청	신청	가능
신청	신청	불가

-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 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
수행중 과제수	신규 신청가능 여부	신규 수행가능 과제수
2개	불가	불가
1개	가능	1개
0개	가능	2개

* 단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, 중소기업 R&D 기획역량 제고사업',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',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' 및 '이공계전문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'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-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-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□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」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

-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 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 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

※ 연구시설 장비라 함은 연구 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※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 장비는 연구시설□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

- ⑤ 국 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
-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적용함

10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기업청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공고	1357(내선 2번)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
관리기관	각 지방중소기업청	현장조사	관리기관현황참조

□ 관리기관현황

기 관 명	전 화	주 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2110-6365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
부산[울산]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38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대구[경북]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89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
광주[전남]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51	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5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54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58	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33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4	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11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58	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제주특별자치도(기업지원과)	064-710-2638	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
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: <http://www.tipa.or.kr>

※ 작성시 고려사항

- 기술개발투자비(연구개발비)은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 원가명세서의 해당계정과목에 계산된 금액

재무제표	계정과목	연구개발비 해당금액
대차대조표	무형자산의 개발비	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(=당기말 개발비-전기말 개발비+개발비상각비)
손익계산서	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연구개발비	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
제조원가명세서	제조경비의 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연구개발비	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
기타원가명세서	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연구개발비	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